

세종산학협력단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규정

2016. 6. 1 제정

2020. 3. 1 전부개정

2022. 3. 1. 일부개정

<산학술루션팀>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 제15조에 따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교원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2. 3. 1.>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1. “연구개발능률성과급”(이하 “성과급”이라 한다)이란 연구과제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연구자에게 연구과제의 간접비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말한다. <개정 2022. 3. 1.>
2. “기준간접비”란 세종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에서 해당 과제에 대응자금을 지원하거나 간접비를 사용하는 경우 총 간접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22. 3. 1.>

제3조(지급대상) ① 성과급은 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으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(참여)연구자에게 지급한다. 다만, 공동(참여)연구자에 대한 성과급은 연구책임자가 결정·배분한다.

② 간접비 없는 연구책임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.

제4조(성과급 총액) 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% 범위내에서 지급한다.

제5조(지급방법 및 시기) ① 성과급은 학년도 말 또는 차기 학년도 초에 연구성과를 평가하여 지급한다.

② 성과급은 평가결과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.

제6조(평가기준 및 비율 등) ①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 기준 및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연구비 : 50%
2. 논문 : 30%
3. 기술이전 : 20%
- ② 평가결과 등급별 인원 비율(등위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S등급 : 10% 미만
 2. A등급 : 80% 이하(10% 이상 90% 미만)
 3. B등급 : 10% 이하(90% 이하)
- ③ 평가결과 등급별 지급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S등급 : 11% 이내
 2. A등급 : 10%
 3. B등급 : 9%

제7조(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) ① 연구책임자는 공동(참여)연구자의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 및 배분 등을 포함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.

② 성과급 배분 등에 대하여 공동(참여)연구자로부터의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.

제8조(준용 및 세부사항)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 및 고려대학교 「연구관리규정」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22. 3. 1.>

②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(전면개정)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1조, 제2조, 제8조 개정)